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규정

제정 2017. 5.17. 규정 제739호

2020.11.23. 규정 제828호

2024. 4.23. 규정 제90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1. 학생·교직원의 질병 및 부상 발생 예방과 악화 방지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4.4.23.〉
- 2. 학생·교직원의 운동 후 회복과 운동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4.4.23.〉
- 3. 학생·교직원의 건강(상담)관리, 체력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4.4.23.〉
- 4. 단체훈련 및 부별 시합 의무지원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4.4.23.〉
- 5. 시설물(건물)의 방역에 관한 사항
- 6.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
- 7. 학생 보험에 관한 사항
- 제3조(조직) ① 보건진료소에는 소장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- ③ 삭제 <2024.4.23.>
 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진료소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보건진료소장이 된다. <개정 2020.11.23.>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보건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의 제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삭제 <2024.4.23.>
 - 4.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739호, 2017. 5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교학처장"을 "교무처장"으로, "훈련처장"은 "훈련학생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(제906호, 2024. 4. 2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